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2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김승원 · 박선원 · 임호선

이성윤 · 김원이 · 서미화

권칠승 · 박수현 · 신장식

허영 · 최혁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 채권을 일괄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나 배드뱅크가 해당 사업을 위해 차주의 개별적 동의 없이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함.

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외로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

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6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에 제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의5.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게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 ⑤ (생략)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9의4. (생략) <u>&lt;신 설&gt;</u>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1. ~ 9의4. (현행과 같음) <u>9의5.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게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u>
10.·11. (생략) ⑦ ~ ⑪ (생략)	10.·11.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